## 경제개발구의 투자환경과 조건보장을 위한 법률적환경의 조성

강정 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6폐지) 경제개발구에 투자환경과 조건보장을 위한 법률적환경을 조성하는것은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법률적환경의 조성이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보장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되는것은 투자가들이 투자환경을 조사할 때 법률적환경을 먼저 조사하는것과 관련된다.

국제투자환경은 국제적인 자본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모든 요인을 말한다. 국제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커다란 위험성을 안고있다. 그것은 매개 나라의 정치, 경

그러므로 투자가들은 자기의 자본을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투자하기에 앞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환경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국제투자환경에는 물질적환경과 사회적환경이 있다.

제제도와 사회력사적조건이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물질적환경에는 광물자원과 동식물자원, 수력자원, 강하천자원 같은 자연부원환경과 항구조건, 지역의 생김새, 기후, 강수량 같은 자연지리적환경, 도시와 공공시설 같은 기초시설환경이 속한다. 이처럼 물질적환경은 거의 모두 자연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여있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적환경을 《자연환경》이라고도 부른다.

사회적환경에는 정치제도의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같은 정치적환경과 경제제도의 안정성, 경제장성률, 로동생산능률, 재정금융체계, 외화관리체계, 대외무역관리체계, 물자공급체계, 환경보호수준, 평균로임수준, 국제수지, 인민들의 소비수준, 세금수준 같은 경제적환경, 사회질서, 일반적인 교육수준, 문화수준 같은 교육문화적환경, 법률제도의 안정성과 완벽성, 법준수집행에서의 엄격성, 인민대중의 법의식 같은 법률적환경이 속한다.

이처럼 사회적환경은 거의 모두 사람 그자체와 관련되여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환경을 《인간환경》이라고도 부른다.

국제투자환경은 물질적 및 사회적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종합체이다. 그러므로 투자가들은 국제투자환경을 조사할 때 어느 하나의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수입국의 정치정세가 불안정하고 로동생산능률이 낮으며 기초시설조건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가 유리하다고 해도 국제투자활동에 유리한 환경으로 되지 못하기때문이다.

국제투자환경을 조사할 때 투자가들은 법률적환경을 조사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국제투자환경의 거의 모두가 법제도를 통하여 고착되고 공고화되기때문이다. 외국투자보호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투자가들이 투자활동과정에 얻은 수입의 해외송금담보와 같은 외화관리체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게 될 종업원

들의 기술기능수준과 평균월로임수준 같은것이 법과 규정을 통하여 고착되고 그에 대한 준수 또는 집행이 담보되는것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률적환경의 조성이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보장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법률적환경을 조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우리 당의 대 외경제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법규는 우리 당정책의 표현이며 실현수단이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법률 적환경과 조건보장은 법과 규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것은 경제개발구에 관한 우리 당의 정 책적요구를 잘 알아야 그에 맞는 법과 규정을 채택공포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제개발구에 관한 우리 당의 정책에는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개발원칙, 관리원칙을 포함하여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창설운영, 우대 및 특혜보장, 신소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경제개발구에 관한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를 어떻게 규범화하는가 하는것은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때만이 해결할수 있다.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를 법규범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이 우리 당의 대외경제정책의 표현, 실현수단으로 될수 있고 투자가들이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운영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을수 있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법률적환경을 조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규제하는것이다.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규제하는것은 투자가들이 경제개발구법규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선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제정공포된 특수경제지대에 관한 법으로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 있다. 이 법들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 평, 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적용할것을 목적으로 채택한 법들이다. 즉 경 제개발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개발구에 적용할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다. 이 법 제9조와 부칙 제2조를 보면 그것을 알수 있다. 제9조(적용법규)에는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라고 규제되여있으며 부칙 제2조(적용제한)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다. 이 법시행을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으로 규정들을 채택공포하게 된다. 주체 105(2016)년 5월현재까지 《경제개발구 창설규정》,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 《경제개발구 기업창설운영규정》, 《경제개발구 로동규정》, 《경제개발구 부동산규정》, 《경제개발구 보험규정》, 《경제개발구 세금규정》, 《경제개발구 환경보호규정》, 《경제개발구 가공무역규정》, 《경제개발구 중계무역규정》이 제정공포되였다. 앞으로 경제개발

구법시행을 위한 규정들은 계속 제정공포되게 된다. 이 규정들의 시행을 위한 세칙은 각 도 (직할시)인민위원회가 결정으로 채택공포하게 된다.

시행규정에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시행세칙에서는 지방정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규제하게 된다. 해산경제개발구라고 가정할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을 통하여 량강도인민위원회에서 해산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에 관리권한을 넘기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량강도인민위원회는 《혜산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시행세칙》을 통하여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이 관할지역안에서의 경제무역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권한을 넘겨받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혜산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준칙을 통하여 량강도인민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관리권한의 행사를 위한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들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경제개발구들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내용을 규제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들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게 내용을 규제해야 경제개발구들의 특성이 살 아날수 있고 국가가 나라의 여러곳에 경제개발구를 창설한 목적도 달성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채택공포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50호로 8개 도의 13개 지역을 경제개발구로 공포하였다. 여기에는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온성섬관광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가 속한다.

주체103(2014)년 6월 11일에는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포함하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주체103(2014)년 7월 23일에는 진도수출가공구, 강령록색시범구, 은정첨단과학기술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를, 주체104(2015)년 4월 22일에는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창설하였다.

여기서 볼수 있는것처럼 경제개발구의 명칭은 서로 다르다. 이것은 경제개발구의 창설 목적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이 경제개발구마다 서로 다르게 규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같은 농업개발구라고 하여도 북청농업개발구는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개발구인것만큼 이 부문의 투자가가 다른 부문의 투자가보다 더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받도록, 어랑농업개발구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농축산기지와 채종,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개발구인것만큼 이 부문의 투자가에게 다른 부문의 투자가보다 더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받도록 규제해야 한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법률적환경을 조성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셋째로, 다른 나라들과 의 투자조약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개발구에 적용할것을 목적으로 제정공포한 법과 규정에 대한 선전을 잘하여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을 높이는것이다.

우선 다른 나라들과의 투자조약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서 기본은 투자가들에게 적용하

는 우대 및 특혜조치이다.

우대 및 특혜조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세금특혜조치이다.

문제는 우리가 취하는 세금특혜조치가 외국투자가본국의 세금제도와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는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투자가에게 세금을 면제시키거나 감면시키는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외국투자가의 본국에서는 그것을 리윤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르는 세금을 받아내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외국투자가의 본국에 공손히 양보하는 것으로 된다. 결국 국가가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세금특혜조치는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특혜조치가 은을 내도록 하자면 반드시 외국투자가의 본국과《2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세금특혜조치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받은 수익이 외국투자가본국의 세금납부대상이 아니라 외국투자가자신의 수익으로 되도록 조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의 세금항목을 정하고 징수하는 당사자가 국가이므로 이 문제는 국가간의 약속이 없으면 해결될수 없다.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해야 이러한 약속 즉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수 있다. 국제투자가 외교관계수립을 전제로 한다는 리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경제개발구에 적용할것을 목적으로 제정공포한 법과 규정에 대한 선전을 잘하여 야 한다.

법과 규정을 채택공포한 다음 그에 대한 선전을 잘하는것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 가들의 관심을 높이고 경제개발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개발구의 법과 규정에 대한 선전을 잘하여야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을 높일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은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대한 료해로부터 시작된다. 외국투자가들은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가 투자하는 재산이나 재산권, 기술비결이 어떤 방법으로 보호되는가, 국가적조치에 따라 몰수 또는 국유화되는 경우 그것이 어떤 절차에 따라 얼마만큼 보상받을수 있는가,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채용 또는 해고시킬수 있는가 하는것 등 투자와 관련한 모든것을 법과 규정을 통하여 알려고 한다.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대한 선전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출판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출판하는 사업은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대한 선전에서 첫째가는 공정이다. 그것은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경제개발구의 법률적환경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가 알고싶은 문제들이 로출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개발구에 적용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규정이 수정보충되거나 새로 채택되면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로 즉시 출판하여 외국투자가들이 모두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해설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해설하는 사업도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대한 선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출판하는 방법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

것은 외국투자가의 대부분이 법전문가들이 아니며 외국투자가의 전문변호사라고 하여도 그 가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구법과 규정에 정통한 법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해설하는 사업은 투자유치활동과정에 할수도 있 고 투자토론회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도 할수 있으며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해 설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경제개발구에 적용 되는 법과 규정을 해설하는 사업은 사전준비를 충분히 한 기초우에서 명백하면서도 간결 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개발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이바지 해야 할것이다.